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경과

2019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책 심포지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III
회장 임 초 선



한국전문간호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목 차

- I. 전문간호사 국내 현황
- II.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경과
 -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 ✓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연혁

분야별 간호사(1973년~)

전문간호사(1990년대~)

정부

의료사각지대 해소

- 부족한 의사 대체
- 정부의 무의촌 해소 정책
- WHO의 "Health for All by 2000"
- 정부의 입원대체서비스 개발 정책

상급
종합병원

소비자중심 서비스 제공

- 세분화·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 의사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의료공백 해결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법적 보장(보건의료기본법)

1961

•마취 간호장교 5명(국방부)

1973

•마취, 보건, 정신 (의료법 제 56조)

1980

•보건진료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90

•가정 (DRG제도 도입)

2000

•전문간호사 (의료법 제 56조)

2003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설(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2006

•종양, 임상, 아동 교육과정 신설(총 13개 분야)

2015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창립

2018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개정

분야별 전문간호사 배출현황

출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8 APN annual report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5 이전(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B)	총합 (A)+(B)
가정	5,358	364	399	11	42	51	55	51	44	32	25	14	22	16	21	1,147	6,505
감염관리	-	-	40	49	49	24	-	33	-	45	22	21	27	24	33	367	367
노인	-	-	259	256	455	162	159	125	160	167	134	118	107	75	111	2,288	2,288
마취	570	7	-	2	7	10	-	12	-	6	5	7	8	6	-	70	640
보건	2,048	-	3	-	-	1	-	-	-	-	-	-	-	-	-	4	2,052
산업	-	-	73	15	15	3	-	7	-	9	4	3	7	8	10	154	154
아동	-	-	-	-	-	12	10	12	-	19	8	11	11	6	10	99	99
응급	-	-	57	30	42	28	-	30	-	42	19	17	12	10	15	302	302
임상	-	-	-	-	-	-	30	37	44	36	26	27	29	21	30	280	280
정신	188	-	47	29	64	22	-	49	-	52	18	29	38	23	33	404	592
종양	-	-	81	79	85	40	31	82	78	72	63	76	66	54	63	870	870
중환자	-	-	111	80	96	58	41	46	45	42	40	30	36	33	34	692	692
호스피스	-	-	54	39	83	34	40	36	46	45	40	32	28	38	40	555	555
전체	8,164	371	1,124	590	938	445	366	520	417	567	404	385	391	314	400	7,232	15,396

※ A 2005년 이전 자격취득자 (총 8,164명, 가정5,358명, 마취570명, 보건2,048명, 정신188명)

B 2005년 ~ 2018년 자격취득자 (7,232명)

▪ 2018년 12월 현재 전문간호사 수 : 15,396명

국내 전문간호사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계	
		간호부	타부서	간호부	타부서	간호부	타부서	간호부	타부서	인원	병원수
마취	전문간호사	23	3	5	-	-	2	-	-	33	8
정신	전문간호사	8	-	9	-	11	-	-	-	28	9
가정	전문간호사	79	15	67	10	18	1	1	-	191	58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8	29	9	36	-	-	-	-	82	47
응급	전문간호사	13	-	7	-	1	-	-	-	21	12
노인	전문간호사	67	1	6	-	1	-	-	-	75	13
중환자	전문간호사	65	1	3	-	-	-	-	-	69	8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31	2	17	2	-	1	-	-	53	24
아동	전문간호사	11	-	-	-	-	-	-	-	11	2
종양	전문간호사	50	31	18	-	-	-	-	-	99	22
임상	전문간호사	17	4	-	-	-	-	-	-	21	3
계		372	86	141	48	31	4	1	-	683	-

* 1명 이상의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은 88개임

출처 :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2018

국내 전문간호사 현실

- ✓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 ✓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부재
- ✓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업무 현장이 다름
 - 활성화 저조로 고용 기회 미비 가 원인, 자격 소지자의 차등 대우 미비
- ✓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진료지원인력(PA 등)의 급격한 증가, 역할 혼재**
- ✓ 전문간호사 역할의 미인정, 13개 분야별 활동 상황 간극 심화

- **2018년 기준 13개 전문간호사 과정 평균 등록률 60.6%**
 - 2018 APN annual report,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017년 기준 전체 자격취득자 중 13백여명 활동 중**
 -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대책보고서, 2018.03
- **임상에서 활동 하는 전문지원인력 중 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 19.4%**
 - 500병상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지원인력 운영실태, 2016, 병원간호사회

의료법 제 78조 개정 공포(2018.03.27)

개정 전	개정 후	제안 이유	비고
제78조(전문간호사) ① (생략)	제78조(전문간호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u>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u>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에 명시	· 상위 법률로 규정 ·전문의 조항과 동일시
<신설>	③ <u>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 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 에 종사케 함 ·전문간호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u>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일 : 2020. 3. 27]	법으로 업무를 정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소지를 없애고자 함	· <u>자격 시험</u> , 업무 범위 를 법에 명시 ·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전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료법 제 2조 5항 (간호사 임무)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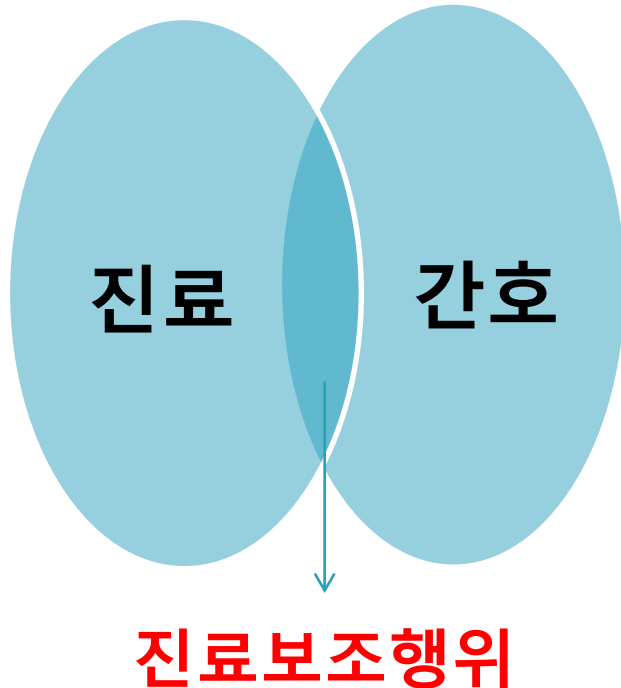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1. 진료와 간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2. 진료=진단+치료(투약, 처치, 주사)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3. 간호=투약, 처치, 간호
4. 투약과 처치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수행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인가,
본래 간호사의 고유업무인가 해석의 여지 있음)
1)진단은 의사의 고유업무
2)간호는 간호사의 고유업무로 파악
5. 주사 : 의사의 업무이지만 간호사에게
위임 가능한 의료행위로 봄
(대법원 2001도3667 판결)

현행법 중 간호사 업무관련 법률 현황

간호사 분야	근거 법률	내용
가정전문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기능 및 업무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관리료 산정시 인력 기준 명기
보건관리자 /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업무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종양 포함)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 (가정형/자문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농어촌 의료법 시행령	기능 및 의료행위 업무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전문요원)	업무 범위과 한계, 정신간호사 자격.등급
방문간호사 (장기요양요원-간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의 방문간호 인정 기능 및 업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형 집행법 시행령	경미한 의료행위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료행위
응급전문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해당
마취,중환자,종양,임상,아동,노인 전문간호사	무	무

현행법 중 간호사의 1차 의료행위

농어촌의료법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농어촌 의료법 시행령,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 2. 환자의 이송
-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
에 대한 응급처치
-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5. 만성병 환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 7. 예방접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다

형 집행법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 형 집행법 시행령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환자의 영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학교보건법

보건교사

- 학교보건법 시행령
- 1. 보건교사의 직무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가정간호의 범위 (의료법시행규칙 24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 1. 간호
 -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 3. 투약
 - 4. 주사
 -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6. 상담
 -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활동

■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정책 연구 1차 TF

- 2016.06 팀 구성 및 계획 수립
- 2017.02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 소책자 발간
- 2017.04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논문

■ 업무 범위 법제화 2차 TF 운영

- 2018.05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문위원 구성 : 20명
 - 중환자,종양,임상,노인,산업,아동,호스피스,가정,감염,마취 등
 - 2019.10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한국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 논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활동

- **업무범위 법제화 특별위원회로 승격 운영**
 -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관련 회의 참석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 TF 팀 교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자문

- **업무법제화 주제로 정책 행사 연속 개최**
 - 2018.03 “전문간호사 법제화: 현실과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
 - 2018.11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 정책 심포지엄 – 분야별 대표 패널 토의
 - 2019.03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I” 정책 심포지엄 – PA 현안 패널 토의

2018 한국전문간호사 정책 심포지움(11/10)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 패널 토의

유관 단체 대표	발제 내용
<p>병원중환자간호사회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 -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관련 연구, 관련 장비 선정 및 관리, 자문활동 협진료 산정(수가 보상) 교육기관 및 모집정원 확대 필요
<p>종양전문간호사과정 협의회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환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환자 상태가 다양하다.(암관리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관련) - 암예방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넓고 의사가 다 개입하기에는 비효율적임 - 임상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영역도 포함 필요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한 수가 개설 필요 13개 영역을 공통된 영역별로 묶어서 통합이 필요. 자격은 필요 역량 입증 세부는 기관과 협의하여 직무기술서로 정하는 게 바람직 함
<p>가정간호사회 부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간호 방문시 환자 교육 수가 신설 필요 기존 법제화된 업무의 확대 필요 - 기본적 처치는 처방 없이 가능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처우개선 필요
<p>병원응급간호사회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및 모집 정원 확대 필요, 업무가 겹치는 분야는 통합 필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상급응급간호실무, 간호사 교육 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으로 응급의료기금 지원 필요 - 응급실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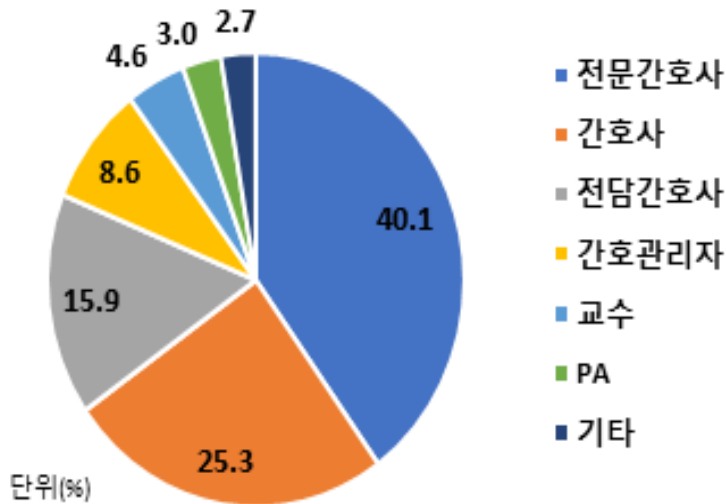
2018 한국전문간호사 정책 심포지움(11/10)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I - 패넬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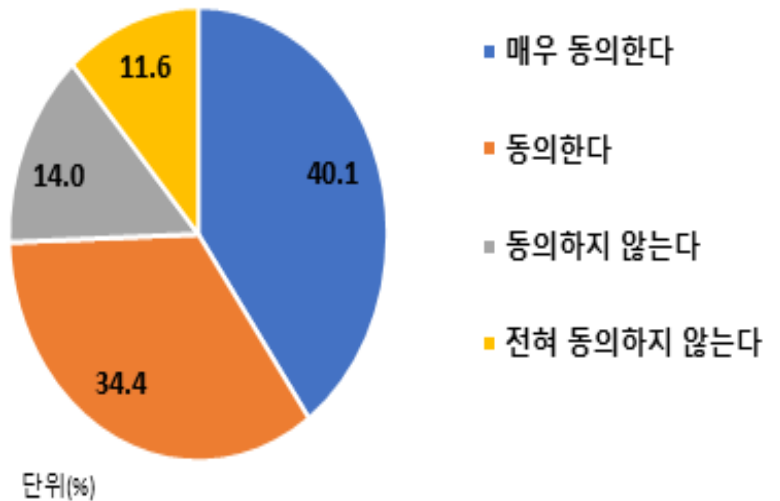
유관 단체 대표	발제 내용
한국호스피스완화 간호사회 인천경기지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영적인 돌봄, 다학제적인 돌봄 강조2.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업무 보다는 전문간호사 고유의 업무가 중요3. 기존 법의 내용보다 업무 명확성이 더 필요하고 술기와 처치 가능케 필요4. 수가 보상 필수
감염관리간호사회 부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16년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인력 배치 기준으로 학회에서 인증된 감염관리전문가도 인정(배출된 전문간호사가 충족수에 미치지 못함)2. 분야별 수가 신설 필요, 자격갱신과 교육등 질관리 필수

정부의 PA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한전협 설문 조사

설문 대상자



동의 정도



응답 372명/ 664 명 배포

2018년 11월 16일~11월 21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PA문제 해결에 대한 동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활동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포럼 참여

- 2019.04 The 10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패널 참석

발제 내용



1. 전문간호사 제도와 국내 현황 소개
2. “ PA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3.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를 앞두고 유관단체와 적극적 협의 필수, 업무범위 협의체에 한전협 포함 의지 피력
4. “국민의 기대에 맞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활동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

-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바란다 -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전문의 2인), 대한간호협회(간호사 2인), 대한병원협회(전문의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 2인), 대한의학회(전문의 2인), 병원간호사회(간호사 2인)가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제2조)와 더불어 전문의(제77조), 전문간호사(제78조)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6명, 전공의 2명, 그리고 간호사 4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간호사는 제외되었다**. 보건의료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논의 협의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구성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는 모든 의사, 간호사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현실에 기반을 두어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묻는다.

□ 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전문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보건의료전문인력 활용의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국내 전문간호사는 2000년에 의료법에 명시되어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을 받고 2018년 12월 현재 15,396명이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양성되었다. 2018년 3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8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업무범위를 명시해 나가야 하는 현재 시점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협의체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전문간호실무를 발전·보급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여러 차례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가 법으로 제정되도록 현장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회는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문간호사의 실무가 잘 반영되고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제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 협의체는 의사와 간호사, 전공의와 전문간호사가 모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에 논의의 핵심 가치를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인 정부의 믿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 발표

■ 한국간호과학회와 연대 성명

2019년 7월 1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활동

■ 정책 연구 진행

-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한국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 2019.10월 말 예정
-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를 위한 연구“ 병원간호사회 용역 연구, ~ 2019.12
-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 분석”, ~ 2019.12
-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자문위원회로 참여 중, ~2019.11

■ 국회의원실 면담

- 전문간호사 현안에 대한 소통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경과는?**

2018년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활성화 추진

② 전문간호사 활성화 추진

-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완료 ('18.2~)
 -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을 고려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추진

○ (개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상급수준의 전문
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인력,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

*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 (자격요건) 간호실무 3년이상 경력 + 대학원 과정 이수 + 국가 자격시험

○ (현황) '17년 전체 자격취득자 14,996명, 약 13백여명 활동 중

국회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201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의료기관별 PA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PA문제에 대한 제도화 또는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	○ 의료기관별 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 추진('18.3월 발주) - 연구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 협의예정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PA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 규정을 만들 필요를 느낀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PA, 마취·임상 전문간호사 편입 또는 신설 검토”**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18년 10월 3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역할을 마취와 임상, 감염 등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개정법이 2020년 3월 시행된다. 당초 1년 유예였으나 전문간호사 역할과 범위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2년 유예로 조정했다”면서 “PA 간호사들이 제도로 편입되면 수가 부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신설(2019.02)

- 복지부 간호정책 TF는 ▲교대제 개편연구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전문간호사 활성화 연구 등을 통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범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기능은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 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추진, 취업교육센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등이다.
-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 간호정책TF 무슨 일 하나?.."간호 수급·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 진행(2019.06~)

- 연구 주제 :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연구내용
 -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 전문간호사 제도 경과 및 현황
 - 전문간호사 양성과정
 - 전문간호사 수급현황 및 전망
 - 전문간호사 활동현황 및 근무환경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대한간호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9.10.31일까지
- 연구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직무범위 협의체 운영(2019.06~)

“의료보조인력(PA)와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 ”

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1차 회의(0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이를 유권해석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p>쟁점 행위 8개 영역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 수렴 후 논의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활용 : 합의된 대안을 반영하여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및 의료계 공유
2차 회의(0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로 명칭 변경 <p>각 단체별 논의 대원칙과 쟁점 행위 목록안 공유, 대한의사협회 미제출</p>
3차 회의(08.2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의 처방,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예: 환자 관찰 등) 2. 의사가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처방, 지시한 내역을 간호사가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3.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4.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예: 수술 집도) <p>네가지 분류 형식에 맞게 쟁점행위목록 작성하여 논의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p>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II-1)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 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예)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 ②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 ③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예)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2019.08

업무범위 법령안의 입법절차

○ 정부입법절차



○ 단계별 소요기간

소요기간 보통 5~7개월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공포	약 3 ~ 4일

복지부가 입안

새로운 협의체 구성 vs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없이 예비심사로 생략 가능

국장 결재

감사합니다
